

무역 및 관세뉴스

관세에 행정제재에 관한 제 128/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26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배경

- 2020년 10월 19일자 관세 행정제재에 관한 제128/2020/ND-CP호 시행령 (제128호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128호 시행령이 발효될 시점부터 2013년 10월 15일자 관세 행정제재 및 행정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제 127/2013/ND-CP호 시행령 (제127호 시행령) 및 2016년 5월 26일자 제127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 45/2016/ND-CP 호 시행령 (제45호 시행령)의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 제128호 시행령은 행정위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며 현행규정보다 상당히 높은 제재수위를 적용할 것이다.
- 이뉴스를 통해서 제128호 시행령의 주요사항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적용범위

본 시행령에 따른 관세 행정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세철자에 대한 위반;
- 관세 감사, 감독, 관리에 대한 위반;
- 수출입 상품의 조관세리에 대한 행정위반;
- 수출입 상품과 관련 기타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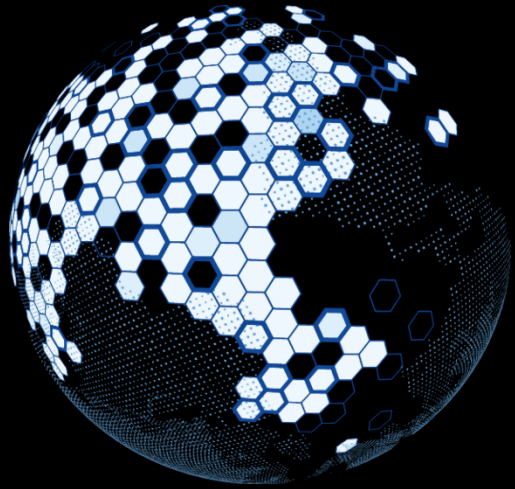
적용대상

- 베트남에서 관세 위반행위가 확정된 국내 혹은 외국인 개인 및 단체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타 규정 제외)
- 본 시행령에 따른 행정제재에 관한 기타 기관, 단체, 개인

무역 및 관세뉴스

관세에 행정제재에 관한 제 128/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26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1 관세절차 및 납세신고 기간에 대한 위반 (제7조)

기한 규정을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 규정된 기한내에 실제 지급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관세신고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가치에 대한 추가 조정을 하지 않음;
- 자동차 제조·조립에 관한 관세 인센티브 정책 및 자동차 생산 지원 산업에 관한 관세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수입부품에 대한 0% 관세율을 적용의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2020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Limited Company

- 제조제품의 실제 BOM (Bill of Material)을 규정 기한내에 고지하지 않음;
- 비과세, 면세, 관세할당 에 따른 세율을 적용된 대상 물품을 국내 판매로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후 다만 관세감사, 조사 결정이 나오기전에 신고절차를 실시함.

2 관세 신고에 대한 위반 (제8조)

제128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위반행위를 보완한다:

- **세금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세 부과된 수입품의 수량 (VND 1천만동 또는 그이상인 가치), 명품, 유형, 품질, 관세가치, 원산지 및 코드를 잘못 신고함;**
- **관세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관세규정에 따라 관세 신고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신고하지 않음;**
- **보세창고 또는 보세 공장에 입고된 물품 혹은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에서 해외로 출고된 물품의 수량 (VND 1천만동 또는 그이상인 가치), 명품, 유형 및 원산지를 잘못 신고함;**
- **관세신고자가 자체 위반사항을 발견한 후 규정된 기한 이후에 추가 신고한 경우 제재를 보완함.**

무역 및 관세뉴스

관세에 행정제재에 관한 제 128/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26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3

세금 납부액 감소나 면세, 감면, 환급 혹은 세금 미징수 세액을 증가로 이어지는 납세신고에 대한 위반 (제9조)

세금 납부액 감소나 면세, 감면, 환급 혹은 세금 미징수 세액을 증가로 이어지는 납세신고에 대한 위반은 아래와 같이 **보완한다**:

- 수출품을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수입된 원자재료의 사용 수량을 실제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게 정산보고를 작성;
- 수출품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한 수입품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제조 및 가공시설이 없거나 수출품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료를 제조 및 가공에 적합한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음;

면세, 감면, 환급, 미징수 등의 경우 세금 미만신고액 또는 초과신고액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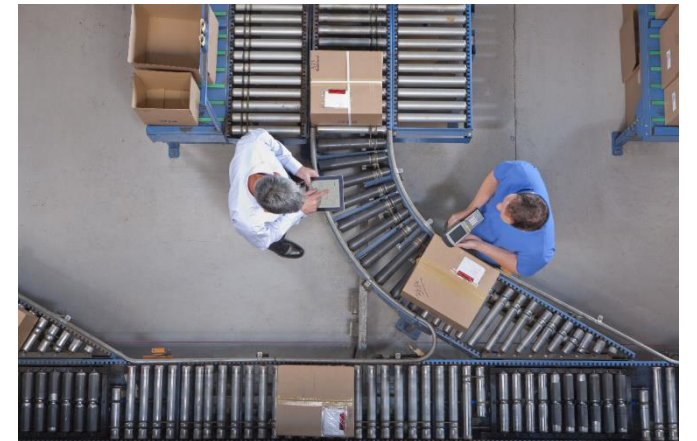
- 납세자가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다만 관세감사, 조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세금정산을 수정한 경우에 10% 벌금이 부과됨;
- 관세당국이 조사·감사를 통해 관세신고된 물품의 가치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며 (실제 결제액, 추가 조정등 없이) 납세자가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결한 경우 20% 벌금이 부과됨.

4

관세 조사·감사에 대한 위반 (제11조)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보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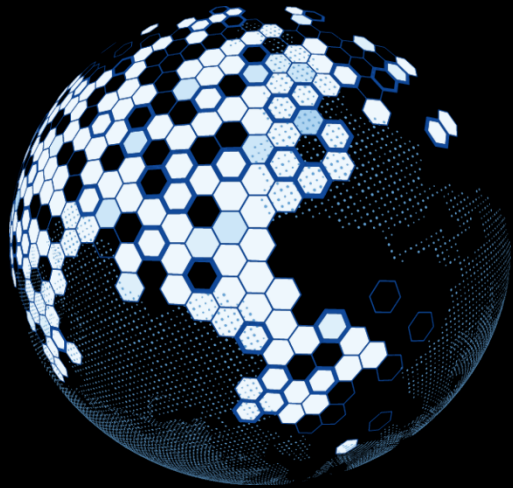
- 회계장부 및 관세신고서와 일치하지 않게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세당국의 조사·감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음;
- 면세점에서 "베트남 관세미납" ("Vietnam duty not paid") 인감도장 찍지 않은 상품 판매;
- 면세점에서 수출입 금지되거나 중단된 상품을 판매;
- 관세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입 상품의 수량, 명품, 종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추가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무역 및 관세뉴스

관세에 행정제재에 관한 제 128/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26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5 관세감독에 대한 위반 (제12조)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5백만동에서 8천만동까지 (현행 규정에 따른 최고 벌금수위인 6천만동 보다 증가함) 적용한다.

주목할 만한 추가내용이 아래와 같다:

- 수출가공기업은 가공·제조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과 불량품의 처리에 대해 관세당국에 통보하지 않음;
- 관세당국에 통보 없이 또는 관세당국에 의한 승인 없이 면세창고에서 면세점 또는 항공기 및 반대로 물품을 운송함;
-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물품을 운송시 관세당국 또는 운송업체의 밀봉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못 하는 행위; 관세당국 또는 운송업체의 봉인을 위조하는 행위. 상품이 소비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 진다.

6 조세회피에 대한 처벌 (제14조)

다음과 같은 조세회피 행위를 보완한다:

- 수출품의 가공을 위해 수출세 부과된 국내 원재료를 구매할 시 신고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을 구성 한 수출 원재료 및 부품의 가치를 잘못 신고하므로 베트남에 재수입할 때 가공품에 대한 면제 세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발송인과 제휴함.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이 위반하는 납세자에 대한 벌금은 개인과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행 규정상 개인과 단체에 따라 벌금 수준이 다름):

-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1번의 조세회피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됨;
-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사유당 0.2배 추가 부과하나 총 가산세액은 해당 조세회피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은 벌금이 부과됨.



무역 및 관세뉴스

관세에 행정제재에 관한 제 128/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26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7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내역	제128호 시행령	현행 규정 (제127호 및 제45호)
경감사유 (제3호)	02 경우	03 경우
관세에 행정제재에 대한 면책 (제6호)	04 경우	07 경우
관세관리에 대한 위반 (제13호)	VND 1백만동에서 VND 8천만동까지의 벌금	VND 1백만동에서 VND 6천만동까지의 벌금
베트남의 보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잘 못 된 국가주권을 반영하는 이미지나 내용을 담은 상품을 수출, 수입, 임시수입 재수출, 환승 및 이관 등의 경우 (제16호)	VND 1천만동에서 VND 1억동까지의 벌금	규정 없음
베트남 원산지 위조품을 수출, 수입, 임시수입 재수출, 환승 및 이전등의 경우 (제17호)	VND 1천만동에서 VND 1억동까지의 벌금	규정 없음
관세 할당, 라이선스, 관리, 표준 및 규정에 따른 상품을 수출입에 관한 위반 (제18호)	VND 2백만동에서 VND 5천만동까지의 벌금	별도의 규정 없음
수출입자를 지정된 목록에 해당된 상품을 수출입에 관한 위반 (제19호)	VND 3천만동에서 VND 5천만동까지의 벌금	규정 없음
임시수입 재수출 및 임시수출 재수입에 관한 위반 (제20조)	VND 2천만동에서 VND 1억동까지의 벌금	별도의 규정 없음
수입품의 표시에 관한 위반 (제22호)	VND 5십만동에서 VND 6천만동까지의 벌금	규정 없음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